

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2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24일

3. 제안이유

가. 상위법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 “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”이 신설되고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

나.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“시골마을 행복택시”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재정지원의 대상(안 제2조)

○ “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” 신설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3호는 ‘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’을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, 운행계통·운행시간·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고,
- 같은법 제50조제2항은 ‘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’고 규정하여 시·도 조례로 재정 지원 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`15.1.12.~`15.1.3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도민들의 교통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지만,
- 금년도 시행되는 100개 마을의 선정기준, ‘시골마을 행복택시’ 사업의 사전수요예측결과, 경제성분석,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의 사업타당성, 타시도의 운영사례 등에 대한 상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